

제 258 회 임 시 회
제4차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3월 26일(月)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기 봉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2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2월 20일

3. 제안이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개정(2006.1.11)에 따라 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조정(안 제2조제1항).

나.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17 개정(2005.8.5)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의 자격기준 보완(안 제3조제2항).

(1) 검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추가

(2) 대학교수는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건축공학 등 감사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구체화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추가

5.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고, 주민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견없음.

붙임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